

정 관

코웨이 주식회사

정 관

코 웨 이 주 식 회 사

제정 1989. 5. 1

개정	1989. 7.21	1989.12.29	1992. 4. 1
	1992. 8.12	1994. 3.24	1994.12.30
	1995. 3.21	1995.12.30	1996. 3.27
	1997. 2.15	1998. 3.23	1999. 3.23
	1999. 11.20	2000. 3.17	2001. 3.16
	2002. 3.15	2005. 3.28	2006. 3.24
	2008. 3.21	2008. 8.12	2009. 3.20
	2010. 3.19	2012. 3.23	2012.11.27
	2013. 3.22	2014. 3.21	2017. 3.28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코웨이주식회사라고 부르며, 영문으로는 COWAY Co., Ltd.라고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수기 제조·판매업
2. 가정용 기기 제조·판매업
3.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및 사업시설관리업
4. 정수 및 폐기물 처리 설비 제조·판매업 및 사업시설관리업
5. 환경관련 기술연구, 대기 및 수질분석,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6. 수출입 및 무역업
7. 부동산 임대·개발·관리·투자·판매업
8. 수입·제조한 각종 상품에 대한 렌탈업
9. 잡화류 판매업
10. 배관자재 제조·판매업
11. 의료기기 수출입·제조·판매업
12. 방문판매·통신판매·전자상거래업 및 이에 부수한 서비스업
13. 시스템 키친 및 가구 제조·판매업
14. 위생용 도자기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판매업
15. 실내가향제 제조·판매업
16. 도어락, 경보시스템 등 각종 보안설비 및 장치 제조·판매업

17. 액체 여과기 제조, 판매 및 렌탈임대업
18. 헬스기기 수출입·제조·판매업
19. 사회교육시설 운영업
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21.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2. 경비업
23. 소독 및 구충, 일반 청소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24. 커피, 식품첨가물, 일반 식품 등 수입·가공·판매업
25.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수입·판매업
26. 오수/폐수/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사업시설 관리업
27. 자가측정 대행업
28. 화장품 제조기술 연구개발 및 컨설팅업
29. 환경산업 설비, 시설의 설계·시공·감리업
30. 산업환경설비 건설업
31. 신용카드모집, 보험상품중개, 멤버스카드의 발급 및 이에 수반한 서비스 등 각종 금융상품의 판매·자문업
32. 판매·시공·설계한 상품 및 시설 등 또는 기타 상품의 설치·유지·보수·안전 규격시험 등의 서비스업
33. 통신기기 등의 대리점 또는 위탁판매업
34. 시장조사 및 광고업
35. 실내건축공사업
36. 피부미용기기 수출입·제조·판매업
37. 피부미용업
38. 전기공사업
39.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입 및 제조·판매업
40.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41. 화장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업
42.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
43.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
44. 화장실 설치형 헬스케어 제품의 제조 및 판매와 이와 부수한 서비스업
45. 수질개선 및 기능성 용수 제조기 제조 및 판매와 임대업
46. 공기질 측정 및 분석서비스업
47. 다중이용시설 공조시스템 제조 및 서비스업
48. 침대 및 침구 관련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렌탈 및 유지관리 서비스업
49. 집안 환경 관련 청소 서비스업
50.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1.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전문 서비스업
52. 기타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당 회사는 본점을 충청남도내에 둔다.
-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당 회사의 광고는 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oway.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 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 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 7 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60,000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8 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며,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 종으로 한다.

제 9 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총수는 삼천만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년 5%이상으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⑦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 년에서 10 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신주의 배당 기산일)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7조의 제2항의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에 관하여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당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할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제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

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 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당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상법 등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등 관계법규가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총수는 상법 등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3 조(명의개서대리인)

①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는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 13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5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당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는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 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 ①주주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독주주 및 소수주주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진은 그 권한을 존중한다
- ②상법 등 관계법규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이사의 업무집행, 재산상태,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회사 및 주주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회사의 기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대하여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7 조(사채의 발행)

- ①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7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1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제 1 항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제 1 항의 전환사채 발행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1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 ②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

정할 수 있다.

- ⑥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3 조, 제 14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20 조(소집시기)

- ①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 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1 조(소집권자)

-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상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전자적 방법의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헤럴드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3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충청남도)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 또는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4 조(의장)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이사로 한다.
-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6 조(주주의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 27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당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제 1 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③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1부의 위임장으로써 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 29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0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

제 31 조(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2 조(이사의 선임)

-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이사의 선임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이사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다른 결정이 없는 경우 3 년으로 한다.
- ②제 1 항의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제 34 조(이사의 보선)

- ①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31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31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2 인 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35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②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출할 수 있다.

제 36 조(이사의 직무)

- ①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6 조의 2(이사의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

이사는 업무수행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36 조의 3(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당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업 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의 2(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경업금지),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각 이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 2 항을 준용한다.
- ④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이사가 담당하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선임한 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0 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1 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전,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2조(위원회)

①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9 조, 제 40 조 및 제 4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3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4 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 사

제 45 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하고,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 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6 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47 조(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45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8 조(감사의 직무)

-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9 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0 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한도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한도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계 산

제 51 조(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년 1 회로 하며 매기말에 결산을 행한다.

제 52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 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인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제 54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6 조(이익배당)

-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57 조(분기배당)

- ①당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 월, 6 월 및 9 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기 배당을 금전으로 할 수 있다.
- ②제 1 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④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 9 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58 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59조(내부거래등의 승인)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 동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동법 제11조의 2 규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2.회사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특수관계인, 이사, 감사와 상법 제542조의 9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거래 총액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거래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198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198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1992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199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199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199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199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199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199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199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199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199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48조의 2의 개정규정은 개정증권거래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제정)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업무진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칙제정)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업무진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제 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1조, 제 17조, 제 37조의 2, 제 40조, 제 52조, 제 56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주식회사 웅진홀딩스등과 엠비케이파트너스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이에 2012년 8월 15일 체결되고 2012년 8월 29일 엠비케이파트너스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코웨이홀딩스 주식회사로 이전된 주식양수도계약 및 그에 대한 2012년 11월 9일자 수정계약에 따른 중도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지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제 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제 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제 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